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6058     |
| 의 퇴 인 | 남인순 의원      |
| 회 답 일 | 2026. 2. 4. |
| 추계번호  | 26C0193     |

#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확보할 경우,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6억 100만원(연평균 13억 2,000만원)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 2031  | 합계    | 연평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확대<br>(안 제15조의2) | 1,300 | 1,310 | 1,320 | 1,330 | 1,341 | 6,601 | 1,320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15조의2<br>(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) |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'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', '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'을 추가하고, 해당 센터가 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하여야 함을 규정 | 의무규정 |

## 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5조의2<br>(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) | ○    | ○ 소관 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추계 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고,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심리지원 대상자 데이터구축과 장기추적 연구, 관련 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계획을 검토한 이력이 있으므로, 관련 내용을 준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 - 보건복지부는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, 재난 정신건강 정책 수립 및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 기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장기추적 조사에 연간 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
    - 재난경험자 1,000명 x 검사비 1백만원 + 연구원 6인 x 50백만원
  - 본 추계서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을 준용하여 재난경험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비와 연구원 6인에 대한 인건비를 추계
    - 검사비 단가는 추계기간 유지되고,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2027년 단가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<sup>1)</sup>
    - 조사 기간 내 검사대상자의 이탈이 없는 것으로 가정
    - 별도의 시스템 구축비는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1)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(2026.1.20. 기준)

| 구 분     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(%) | 3.3  | 3.3  | 3.3  | 3.3  | 3.3  |

- 추계결과,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를 실시할 경우,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66억 100만원(연평균 13억 2,000만원)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3]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 2031  | 합계    | 연평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검사 대상자 수(명, A)         | 1,000 | 1,000 | 1,000 | 1,000 | 1,000 | —     | —     |
| 검사비 단가(백만원, B)         | 1     | 1     | 1     | 1     | 1     | —     | —     |
| 연구원 수(명, C)            | 6     | 6     | 6     | 6     | 6     | —     | —     |
| 연구원 인건비 단가(백만원, D)     | 50.0  | 51.6  | 53.3  | 55.1  | 56.9  | —     | —     |
| 추가재정소요(A×B + C×D, 백만원) | 1,300 | 1,310 | 1,320 | 1,330 | 1,341 | 6,601 | 1,320 |

주: 추가재정소요는 단수 조정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서는 소관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추계한 것으로 재정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실제 소요재정이 달라질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사회비용추계과 | 김우림 | 이진우 |

-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|
| 김우림 | 02-6788-3738 | wrkim@assembly.go.kr |